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361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테크론

2. A

3. B

4. C

5. D

변론 종결2014. 6. 24. (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2015. 1. 30. (피고 5.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5. 2.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테크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767,167원 및 그 중 619,895,387원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을 제외한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사 테크론, A, B, C : 주문 제1항

○ 피고 D: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13.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47,611,2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금 447,611,2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테크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건보,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1	2009.4.1.	2010.3.31.(2014.3.28.로 연장)	100,000,000원	100,000,000원
2	2011.12.12.	2012.12.11.(2013.12.11.로 연장)	540,000,000원(510,000,000원으로 변경)	600,000,000원

나. 이 사건 보증약정시,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2014. 3. 10.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이행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7. 23.부터 국세를 체납하여 같은 해 10. 12. 신용관리(불량)정보가 등록되었고, 같은 해 12. 12.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3. 10.

619,895,387원(1번 보증 101,311,319원 + 2번 보증 518,584,0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번 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1,844,380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은 4,027,400원(지출한 비용 4,093,470원 중 66,070원을 회수함)이다.

라. 피고 C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5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3. 8. 14.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위 근저당권들의 당시 피담보채무 합계 4억 3,0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고 5억 7,00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D은 피고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3. 9. 4.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7.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11. 14. 위 근저당권들의 채무자를 피고 D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피고 D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 D은 피고 C에게 2013. 11. 28.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3. 14. 그 전날인 13. 인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A, B,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A,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767,167원(대위변제금 합계 619,895,387원 + 추가보증료 1,844,380원 + 법적절차비용 4,027,4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합계 619,895,387원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5.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일 이전부터 피고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피고 C이 가까운 장래에 사전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피고 회사는 2013. 10. 12.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되고, 같은 해 12. 12. 이 사건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사전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피고 C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원고에 대한 위 사전구상금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천 남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감정인 E의 시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879,042,96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면, 피고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 C, D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과 근접한 곳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데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던 자로서 피고 C과 친분관계가 없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전해듣고 직접 매수하게 되었던 점, 피고 D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부동산거래 경험이 있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피고 C을 채무자로 한 남인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들 말고는 가압류, 가처분 등 피고 C의 채무상황을 알 만한 다른 등기는 없었으므로 피고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10억 원은 계약 당시 시가로 감정된 879,042,960원보다 높은 편으로 적정하였다고 보이고 실제로 그 금액이 전부 지급된 점, 한편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매매대금의 12% 정도(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실제 지급하여야 할 5억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1%)에 해당하는 돈만 지급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 D이 잔금으로 사용할 수용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잔금 지급 시기를 유예받을 사정이 있었고, 피고 C으로서는 일부 잔금 지급을 유예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대출금 채무의 부담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원하던 상황에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근저당권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나머지 잔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하고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D은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피고 C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기다리던 수용보상금이 지급되자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사해행위 외에도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마용주

판사김나나

판사성준규

별지